

창북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학교시설 개방시간

구 분	평 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
운동장	06:00~07:30, 17:00~21:00	06:00~21:00
다목적 강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미개방	08:30~16:30
주차장	전날 17:00~다음날 07:30	종일

학교시설 이용방법 및 절차



학교시설 사용료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1시간당)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외
일반교실(1일기준)	1,000	4,000
특별교실(1일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다목적 강당	1,000	8,000
운동장	1,000	8,000

학교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 등을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작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9.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